연천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

[2018. 12. 14 훈령 제524호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원 및 임용, 복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원경찰”이란 「청원경찰법」에 따라 채용되어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.
2. “관리부서”란 청원경찰의 복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3. “인사부서”란 청원경찰의 채용 및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.
4. “소속부서”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연천군수가 임용한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규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정원관리 등) ① 청원경찰의 소속부서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

② 직무의 신설 또는 폐지, 행정조직의 변화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원경찰의 정원을 증원 또는 감축할 수 있다.

③ 관리부서에서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채용목적, 책정인원, 업무량,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
제5조(임용) 청원경찰을 임용할 경우 임용자격・절차・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청원경찰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청원경찰법령”이라 한다)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관장한다.

제6조(성실의 의무) 청원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.

제7조(청렴의 의무) ① 청원경찰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・증

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.

② 청원경찰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비밀엄수의 의무) 청원경찰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근무기강확립) 청원경찰은 「청원경찰법」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신분증) ① 인사부서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한다.

② 신분증 양식은 공무원 신분증 양식을 따른다.

③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.

제11조(근무시간) ① 청원경찰의 1주 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.

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. 다만,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·야간 교대근무 등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청원경찰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의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청원경찰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청사 경비, 화재, 그 외의 사고에도 대비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「연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13조(휴가)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·병가·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
② 청원경찰의 휴가에 관하여는 「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4조(보수 및 수당 등)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따른다.

제15조(포상) 군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「연천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6조(징계) 청원경찰의 징계는 「연천군 청원경찰 징계규칙」에 따른다.

제17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청원경찰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연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등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”을 “공무직 근로자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4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생략(연천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524호 2018. 12. 14 참조)

[별표]

청원경찰 소속부서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(단위 : 명)

소속부서별	정원
계	8
안 전 행 정 과	7
선 사 관 리 사 업 소	1